

【 8 】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출연월일 2008. 1. .

제 출 자 양 주 시 장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 구매 실적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의무구매 대상기관 지정 (안 제4조)
시 및 시소속행정기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공공기관을 지정함.
-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구성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매이행계획수립 · 구매실적관리 · 구매의무 및 예외범위를 규정함.
- 친환경상품 생산 및 소비 촉진방안 강구(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친환경상품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및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규정함.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주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2. 양주시시설관리공단
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4.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기업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제5조(설치 · 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관련기관 ·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과장, 건설과장, 산업경제과장

2. 시의회 의원

3. 산업계 대표, 소비자 · 시민단체 대표, 관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변경 · 폐지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생산 · 유통 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상품 관련업무 주무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0조(시책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 ③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구매실적 관리)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②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구매의무)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구매예외)①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①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 또는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 · 소비촉진

제16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생산 · 유통 · 판매지원) ①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 · 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 · 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제공) ①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 기관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산업계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등

제20조(포상)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이 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1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양주시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안)**1. 환경보호과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과,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과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 실적을 환경보호과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 관련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보호과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소관실 · 과 · 소		환경보호과
입 안 자	실.과 · 소장 직위 · 성명	과장 김경돈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환경행정담당 정영화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유정은 820-2334